

報 道 參 考 資 料

제목: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국가계약관련 대책 마련 · 시행

◆ 주요내용

1. 개요

- 최근 원자재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조달청 등 국가기관이 정부발주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, 정부발주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
- 재정경제부는 이를 해소하고 정부발주 공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회계통칙을 기시행하였으며,
-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임

2. 주요 대책

- 우선, 정부발주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
- 선금지급을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회계예규 “선금지급요령”을 개정하여 기시행('04.3.5) 하였으며,
-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임
- ※ 현행규정상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함

□ 또한,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건설소요 자재 구입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

○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대가를 지급하고,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,

* 관급자재 :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자재

* 사급자재 : 계약서상 계약상대방인 건설업체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

○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회계통칙을 기시행('04.3.8) 하였음

생산과 : 국고국 회계제도과 전화 : 503-9289,503-9290

과장 김재호 사무관 강영수

재정경제부 공보관